경제혁신
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2015년 7월 2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천영길 과장(044-203-4510), 민문기 사무관(4511)

# 산업부, 연구개발(R&D) 성과활용 촉진 나선다

## - R&D 사업 비(非)참여기업도 비영리기관의 성과물 활용을 위해 참여기업과 동등하게 자유로운 실시계약 체결가능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이하, 산업부)는 산업 연구개발**(이하 R&D)** 성과물 활용 촉진을 위해 산업부 R&D사업 **비(非)참여기업**에도 대학·공공연 등 **비영리기관이 개발한 성과물**에 대해, 내년부터 **참여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실시계약을 체결**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.

○ 기존에는 **정부 R&D 성과물을 보유한 비영리기관**은 해당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**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우선 체결**해야 했으며,

○ 참여기업이 참여기업과 실시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등 **일부 예외적인 경우**이거나, **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이후 18개월이 경과**되어야만 **비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**할 수 있었다.

○ 하지만, 앞으로는 **비참여기업도 참여기업과 동등하게 비영리기관 성과물에 대해 실시계약을 체결**할 수 있게 될 예정이며, 이를 위해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」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.

○ 이는 비영리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의 경우 **통상실시권 부여가 원칙**이며, **비영리기관의 민간부담금을 참여기업이 부담하지 않게**('14년 12월 R&D공통운영요령 개정) 됨에 따라, 비참여기업도 자유롭게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.

□ 또한, 기업이 비영리기기관과 **실시계약을 체결하고 납부**하게 되는 **기술료(로열티)에 대한 부담도 일부 완화**할 계획이다.

○ 비영리기관의 경우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한 **기술료 중 일부**를 **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에 사용**할 수 있도록 「기술료 징수 및 사용·관리에 관한 통합요령」을 개정한다.

○ 산업부가 기술사업화 펀드, 사업화 전담은행 제도 등을 활용하여 비영리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에게 **투자 및 저리자금 융자 등을 지원**하기로 했다.

□ 그리고, 기술개발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**성과활용 현황 조사 미응답 및 최하위 등급**을 받은 기관(연구책임자 포함)에 대해 다른 **R&D과제 참여시 감점을 부여**하고,

○ 기술료 징수과제의 경우 열람형태로만 공개하던 **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를 모두 공개**하여 보다 많은 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며,

○ 기술개발 내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**기술은행 등록 과제를 모든 정부R&D 과제로 확대**하고, **사업화 유망 기술등급 제공 및 기술장터 개소** 등을 통해 기술이전도 촉진하기로 했다.

□ **산업부내 R&D 사업 담당자**가 해당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, **사업 평가결과를 성과급에 반영**토록 하고, **전문직위에 준하여 3~4년간 장기 재직**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□ 산업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**정부 R&D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기업도 성과물을 활용**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확대되었으며, 앞으로도 **정부R&D 성과 활용 촉진 및 공공성 강화**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민문기 사무관(☎ 044-203-451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